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충청남도교육청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의 질병결석 인정 가능 안내 협조

1. 관련: 학교교육과-7003(2018.04.09.), 교육부 교수학습평가과-4649(2018.11.08.)

2.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민감군 학생의 질병 결석 인정**이 가능함을 안내한 바 있습니다.

가. 관련규정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교육부훈령 제243호) 별지 제8호(출결상황 관리)**
다. 질병으로 인한 결석
(1)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3)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받는 건강장애 학생이 결석한 경우

나. 처리내용

○ **적용대상: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호흡기 질환, 심혈관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 학생
※ 미세먼지와의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등 명시 필요
○ **질병결석 인정조건**
-**등교시간대**(예: 오전 8~9시) 거주지 또는 학교 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 '나쁨' 이상**이며,
※ 국립환경과학원·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에어코리아(www.airkorea.or.kr)나 우리동네대기질(앱)을 통해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 및 예보 확인 가능
-학부모가 학교에**사전 연락(전화, 문자 등)한 경우**
※**담임교사 확인서** 등을 첨부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 승인 필요

3. 각 학교에서는 위 내용이 가정통신문과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해 **학생 및 학부모에게 안내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이 학기초에 관련 진단서를 제출했을 경우,**질병결석 증빙서류**는**담임교사 확인서로 갈음 가능**

4. 향후 관련 법령(교육부훈령 제243호)을 개정하여,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이 학기초 제출한 진단서로 질병 결석 증빙서류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충청남도교육감

수신자 고,중,초,단설유,특수학교,각종학교,교육지원청

★장학사 학교교육과장

협조자

시행 학교교육과-22297 (2018. 11. 9.) 접수 북일고등학교-16218 (2018. 11. 12.)

우 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선화로 22 (홍북읍) / http://
전화 640-7215 /전송 631-7961 / pdsidkr@cne.go.kr / 비공개(6)